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대전·부산교육청 기관운영감사 -

2019. 7.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3

Ⅲ. 감사결과 ····· 6

1. 감사결과 총괄 ····· 6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 7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8

(1)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통보) ···· 8

(2)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17

(3) 수탁업체의 업무지원 대가 지급 지도·감독 부적정(통보) ····· 24

(4) 물품 통합계약 추진 부적정(주의) ····· 28

(5)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 32

(6) 학교 운동시설의 중금속 등 유해성 검사 생략 부적정(주의) ····· 36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02년 이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3년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감사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 사업 및 업무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의 조직·인사 등 주요 업무와 계약 및 재정 운용 등 주요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 등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의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019. 3. 11.부터 같은 해 3. 29.까지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9. 3. 28. 부산광역시교육청과 2019. 3. 29.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소속 부교육감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을 청취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7. 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1]

1. 대전광역시교육청

가. 조직·인력 현황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3월 현재 기준 본청(3국 13과 2담당관), 2개 교육지원청(동부, 서부), 8개 직속기관, 578개의 각급 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표 1]과 같이 교원 10,140명, 지방직 공무원 1,747명 등 총 12,059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표 1]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원 현황(2019년 3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1,987	11,921	12,059
정무직		1	1	1
일반직	국가직	-	-	-
	지방직	1,720	1,720	1,747
교육전문직원		152	154	171
교 원		10,114	10,046	10,140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나. 재정 현황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은 [표 2]와 같이 2017년 2조 269억 원에서 2018년 2조 629억 원으로 360억 원이 증가하였다.

[표 2]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20,269	20,629	360(1.8)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다. 학교 및 학생 현황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수는 [표 3]과 같이 2016년 573개에서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2018년 578개로 5개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2016년 21만 8천 명에서 2018년 20만 1천 명으로 1만 7천여 명 감소하였으며, 학급 수는 2016년 8,958개에서 2018년 8,806개로 152개 감소하였다.

[표 3]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학교 수	573	575	578
학생 수	218,029	209,676	201,501
학급 수	8,958	8,815	8,806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가. 조직·인력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3월 현재 본청(3국 2담당관 1연구소 14과), 5개 교육지원청(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19개 직속기관, 1,052개의 각급 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표 4]와 같이 교원 18,519명, 지방직 공무원 3,481명 등 총 22,273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표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원 현황(2019년 3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1,973	22,161	22,273
정무직		1	1	1
일반직	국가직	1	1	1
	지방직	3,444	3,422	3,481
교육전문직원		247	247	271
교 원		18,280	18,490	18,519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나. 재정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은 [표 5]와 같이 2017년 4조 213억 원에서 2018년 4조 2,735억 원으로 2,522억 원이 증가하였다.

[표 5]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40,213	42,735	2,522(6.3)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다. 학교 및 학생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수는 [표 6]과 같이 2016년 1,054개에서 2018년 1,052개로 2개교가 감소하였다. 학생 수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2016년 38만 9천 명에서 2018년 36만 4천 명으로 2만 5천여 명 감소하였으며, 학급 수는 2016년 16,302개에서 2018년 15,902개로 400개 감소하였다.

[표 6]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학교 수	1,054	1,061	1,052
학생 수	389,366	376,480	364,167
학급 수	16,302	16,102	15,902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7]과 같이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7]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주의	통보
건 수	7	5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교육부는 식품관계법[2]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2012년 8월 이후 국공립학교에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통보하여 최근 2년간(2017~2018년) 계 324개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부당 제한

(나)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 대전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 시 평정단위별로 정해진 순위를 뒤바꿔 결정할 수 없는데도 2016년 상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순위가 뒤바뀐 채로 결정하는 등으로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다) 수탁업체의 업무지원 대가 지급 지도·감독 부적정

○ 부산광역시는 ○○의 관리·운영을 ㈜□□에 민간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상 이익 발생 시 행정재산에 재투자하도록 약정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할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에도, 위 수탁업체의 공동대표이사 업무지원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급식재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이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실지감사 기간 중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1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였다.

직권면책에 따른 처리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적극행정 처리 현황 개요

관련 지적사항(요지)	신청자	처리결과	면책 인정 사유
■ 제목: (가칭)△△설립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자선정 부적정 ■ 지적요지: 연구용역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설연구소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설 연구소로 규정하였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설 연구소가 아닌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와 계약 체결	직권면책	면책인정 (불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소관기관 교육부

조치기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개요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라 국립·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조달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3]

한편 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라 한다)[4]는 2011년 국회 등으로부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2. 5. 24.[5]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관계 법령"[6]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3) 사립학교의 경우 그 계약사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일부 규정(계약서 생략 시 비치서류, 입찰보증 금액·납부방법)만 준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국·공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하 내용도 위 감사 범위에 한정하여 기술함

4)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같은 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개편됨

5)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구 교육과학기술부)

6) 교육부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식품관계 법령으로 정의·관리하고 있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식재료의 조달방법과 업체선정 기준은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2조와 제43조 및 각 시·도의 「회계규칙」[7]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계약업무는 각각 학교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8]

한편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9]에 부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 등[10]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지방계약법 시행

---

7) 시·도마다 「도립학교 회계규칙」, 「시립학교 회계규칙」, 「공립학교 회계규칙」 등 시·도 회계규칙으로 공립학교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회계규칙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계약사무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8) 입찰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데 2018. 4. 1.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11,811개) 중 공립학교가 84.7%(10,012개)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 기술하는 법조문의 내용은 지방계약법의 각 규정을 인용하였고, 국가계약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별도 표기함

9) '입찰'은 ① 공고하여 불특정 다수를 참가시키는 일반입찰 ② 일반입찰에 일정한 제한요건을 정하여 공고하는 제한입찰 ③ 공고하지 아니하고 참가자를 지명하는 지명입찰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하 기술하는 '입찰'의 개념은 공고의 방식으로 다수의 참가기회를 보장하는 '일반입찰'과 '제한입찰'을 의미함

규칙 각 제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입찰에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받은 자의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하 “계약법령”이라 한다)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위 해당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2012. 5. 24. 행정처분받은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2019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 제한기준과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한 영업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11] 이 경우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표 1]과 같이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

10)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하고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11)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중소기업자 여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1] 입찰참가 제한기준

제한기준	세부 제한사항	
	계약유형	제한 가능 사유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 (그중 1개)	공사	·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특수한 기술·공법 필요시
	물품	· 특수한 설비, 기술, 품질 등 필요시
	용역	· 특수한 기술 필요시
재무상태	공사·물품·용역	· 부실한 계약이행 방지를 위해 필요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사·용역	· 일정금액 미만
	물품	· 일정금액 미만이거나 특정지역 소재자의 물품 필요시
중소기업 여부	물품·용역	· 일정금액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등 구매 시

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재구성

또한 계약법령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제27조의5와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 '부실한 계약이행 등의 사유로 발주 관서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 유죄확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12]'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법령에 따르면 '식품관계 법령 위반 여부'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제한 기준

아울러 [표 2]와 같이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자 전반에 대한 인허가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식품관계 법령을 보더라도 별도의 영업허가 등의 취소처분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만료된 날부터는 영업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1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규정은 국가계약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은 같은 내용의 조문(제31조의5, 2018. 12. 24. 신설)이 2019. 6. 25.부터 시행될 예정임

[표 2] 식재료 업체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주)]

구분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유형	처분명	위반행위	영업제한 기간	위반행위
영업 제한	영업정지	보존 및 유통기준 등 위반	'처분기간' 동안 영업금지	(처분규정 없음)
	품목제조정지	성분에 관한 규격 등 위반	'처분기간' 동안 위반품목 제조금지	(처분규정 없음)
벌과금 벌금	과징금	품목제조·영업정지 해당 행위	(과징금 납부로 갈음)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위생교육 미이수 등	-	원산지 미표시 등
	벌금	법률에서 정한 특정 위반행위자	-	원산지 허위표시 등

주 :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 허가 및 등록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등(시·도,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수행하는데, '벌금' 처분의 경우 행정처분 기관의 고발을 거쳐 법원 판결로 그 처분이 확정됨

자료: 식품관계 법령 재구성

따라서 교육부가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입찰에서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처분만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학교급식법」에 위 해당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했다.

일례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수품 입찰의 경우, 「방위사업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등에서 해당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자와 제한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13] 이는 중앙관서 또는 지방관서에서 입찰에 부치는 개별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약법령에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당시 「학교급식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2](2013. 11. 22.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축산물 등 개별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식재료 공급자의 자격

13)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등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자,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은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가 제한됨

과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11년 국회 등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가 있자 2012. 8. 28.[14] 국·공립학교로 하여금 향후 입찰의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15]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찰참가 제한문구를 명시하도록 하고, 2017년 9월[16]에는 식품관계 법령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벌금) 받은 자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해당 처분만료일부터 6개월로 강화하여 입찰공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19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해당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1.~3. 29.) 중 국·공립학교의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 제한 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17](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

14) 「학교급식 개선 및 안전관리 대책」(구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문서로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의 식재료 조달 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의 협의를 거쳐 이 대책에서 정한 입찰참가 제한문구가 전자입찰공고에 자동 표시되도록 함

15)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도 입찰참가제한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2017. 9. 11.부터는 위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참가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16)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의 협의를 거쳐 2012. 8. 28. 시행한 입찰참가 제한문구에 “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한 후 2017. 9. 11. 이후부터 변경된 입찰참가 제한문구가 전자입찰공고에 자동 표시되도록 함.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자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 처분대상임([표 2] 참조)

17) 2010년 8월 개통하여 2011년 6월 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된 식재료 입찰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10,448개 초·중·고·특수학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9,554개의 식재료 업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있음

게시된 국·공립학교의 입찰공고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함께 살펴보았다.

참고로 위 전자조달시스템은 전국 대부분의 국·공립학교가 이용하는 식재료 입찰에 특화된 정보처리장치로서 그 입찰과정은 ① 학교에서 위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게시하면 ② 위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된 업체들이 입찰서를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확인 결과, 2012. 8. 28. 교육부가 국·공립학교로 하여금 입찰참가 제한문구를 명시하도록 한 이후 2013년부터 2019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업무를 처리한 전국의 모든 국·공립학교가 식재료 입찰공고에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입찰참가 제한문구를 명시하여 공고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최근 2년간(2017~2018년)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전국 426개 국·공립학교가 입찰 방식으로 총 2,067건의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학교가 입찰공고에 위 문구[18]를 명시하였다.

[표 3]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공고한 현황(2017~2018년)

(단위 : 개)

구분	2017년		2018년		계	
	학교 수	입찰공고 수	학교 수	입찰공고 수	학교 수	입찰공고 수주)
국립학교	4	18	3	17	4	35
공립학교	364	1137	276	895	422	2,032
계	368	1155	279	912	426	2,067

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식재료 입찰공고 개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입찰참가 제한문구

입찰공고일	입찰참가 제한문구
2013. 1. 1.~ 2017. 9. 10.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17. 9. 11.~ 2019년 3월 현재	·식품관련법령(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확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결과 국·공립학교의 입찰업무가 계약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되었고, 최근 2년간(2017~2018년) 총 324개 업체가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일정 기간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2013년부터 2019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식재료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학교급식법」 등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입찰참가 제한 등의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방안으로서 위생관리 등을 소홀히 한 업체들의 입찰참가를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급식 안전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생적이고 질 높은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하고 위해한 식재료의 납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① 입찰참가 제한 등 침해적 행정처분은 설사 그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하여 처분하는 것도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19]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처분을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② 오히려 법률에서 위생관리 등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후 입찰업무를 처리할 경우 규제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여 식재료 안전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③ 현재와 같이 법적 근거 없이 입찰참가를 제한할

19)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부정당업자제재 처분취소)

경우 우려되는 소송 위험도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식재료 안전을 위해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필요하였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대전교육청”이라 한다)은 2016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사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등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작성한 평정단위별[20]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안)을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에 심사·결정 의뢰한 후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및 제9조 등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

20) 위 관서는 2017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5급은 4개(본청, 직속기관 각종/특수/고교,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6급 이하는 6개(본청, 직속기관 각종/특수/고교,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동부 유/초/중학교, 서부 유/초/중학교)의 평정단위에서 서열명부를 작성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5급 4개(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각종/특수/고교,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6급 이하는 8개(본청 직속부서, 본청 일반부서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각종/특수/고교,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동부 유/초/중학교, 서부 유/초/중학교)의 평정단위에서 서열명부를 작성

준으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평위원회에 제출하며, 근평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하되 제출된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32조 제1항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반영하여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21]하도록 되어 있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계를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그림] 대전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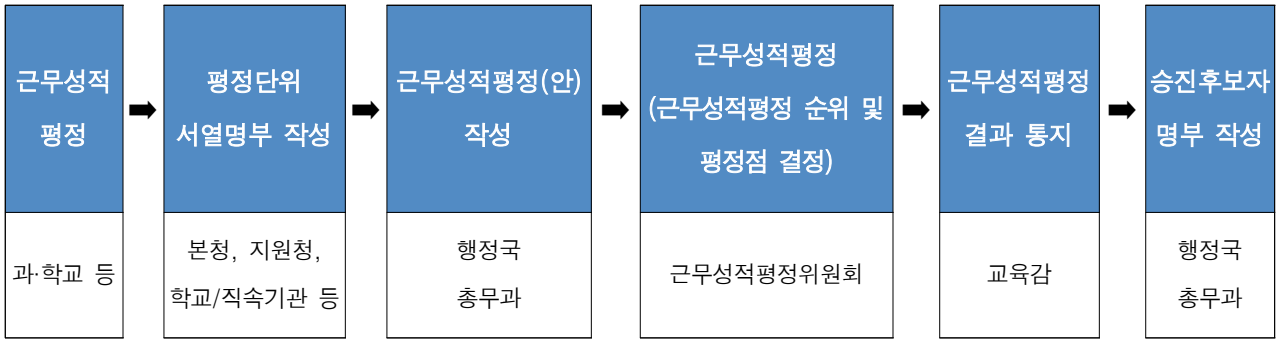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근평위원회에 제출하는 근무성적평정(안)은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가 변경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하고, 근평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무성적평정도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1) 위 관서는 5·6급은 직전 6번, 7급은 직전 4번, 8급 이하는 직전 2번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평균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함

가. 근무성적평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그런데 대전교육청 ▷과 A는 2016년 6월경 “2016년 6월 말 기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 심사(안)”을 작성하면서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은 채 ‘직속기관, 각종/특수/고교’ 평정단위에서 26번으로 정해진 L를 같은 평정단위에서 선순위(15번)인 E보다 높은 근무성적평정 순위로 정하는 등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가 뒤바뀌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정하여 근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명세”와 같이 대전교육청 ▷과 A 등 3명은 2016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안)을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가 뒤바뀌게 작성하고 근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16. 7. 26.과 2017. 7. 28. 및 2018. 7. 27. 개최된 근평위원회[22]에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점수가 [표 1]과 같이 E 등 총 20명의 서열명부 상대적 순위가 뒤바뀌게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안)의 내용대로 심사·결정됨으로써 당해 기간 또는 직급별로 향후 1년에서 2년여간[23] 이 사람들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승진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

22) 2016년 상반기 근평위원회는 2016. 7. 26., 2017년 상반기 근평위원회는 2017. 7. 28., 2018년 상반기 근평위원회는 2018. 7. 27.에 개최함

23) 위 관서는 5·6급의 경우는 직전 6회, 8급 이하의 경우는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평균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어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교육행정사무관(5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2019년 상반기까지,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교육행정서기(8급) 및 지방시설관리서기(8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2018년 상반기까지,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전산주사(6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2021년 상반기까지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표 1] 근무성적평정 시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 명세

구분 (평정 기준일)	평정단위	성명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	근무성적평정 순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주]
2016년 상반기 (2016. 6. 30.)	직속기관 각종/특수/고교	E	15	60	1 → 8
		F	16	51	2 → 5
		G	17	52	3 → 6
		H	18	49	4 → 3
		I	19	50	5 → 4
		J	20	61	6 → 9
		K	21	66	7 → 10
		L	26	46	8 → 1
		M	27	47	9 → 2
		N	32	53	10 → 7
2017년 상반기 (2017. 6. 30.)	직속기관 각종/특수/고교	O	5	34	1 → 2
		P	6	31	2 → 1
	동부교육 지원청	Q	7	32	1 → 2
		R	8	30	2 → 1
	서부교육 지원청	S	10	22	1 → 3
		T	11	20	2 → 1
		U	12	21	3 → 2
2018년 상반기 (2018. 6. 30.)	교육감·부교육감 직속부서(담당관)	V	1	7	1 → 3
		W	2	2	2 → 1
		X	3	3	3 → 2

주: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결정된 인원 상호 간의 서열명부 순위 변화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대전교육청(▷과)은 2018. 1. 29. 근평위원회에 “2017년 12월 말 5급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 심사(안)”을 제출하여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심사·결정 의뢰를 하였다.

그리고 2018. 1. 30.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정하면서 당초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안)과 달리 ‘본청 일반부서, 시의회사무처’ 평정단위에서 14번으로 정해진 B를 2017. 7. 1. 승진하여 현 직급 재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평정단위 후순위자인 Y(15번)과 Z(16번)보다 낮은 근무성적평정 순위로 조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근평위원회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석한 ▷과 실무자인 C와 근평위원회 간사인 D는 이와 같이 순위가 조정되면 서열명부의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데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근평위원회는 [표 2]와 같이 B 등 3명의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여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2]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 명세

구분 (평정일 기준)	평정단위	성명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	근무성적평정 결과 순위	서열명부 순위 변경주)
2017년 하반기 (2017. 12. 31.)	본청 일반부서 시의회사무처	B	14	58	1 → 3
		Y	15	38	2 → 1
		Z	16	40	3 → 2

주: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결정된 인원 상호 간의 서열명부 순위 변화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그 결과 위 관서의 잘못된 근무성적평정이 향후 1년여간[24] 해당 평정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승진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인사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정업무 추진 단계별로 오류 발생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교육감**은

①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4) 위 관서는 6급의 경우 직전 6회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평균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어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지방교육행정주사(6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2020년 하반기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을 위반하여 동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상대 순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명세

소속 (현 소속)	성명	근무기간	업무 부당 처리 내용
▷과 (▽▽고등학교)	A	2016. 1. 1.~ 2016. 12. 31.	□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L이 E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평정(안)을 작성하면서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는 등 10명의 순위를 부당 변경
▷과 (◁◁초등학교)	B	2016. 1. 1.~ 2017. 12. 31.	□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P가 O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평정(안)을 작성하면서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는 등 7명의 순위를 부당 변경
▷과 (▷과)	C	2018. 1. 1.~ 현재	□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V가 W보다 후순위인데도 근무성적평정(안)을 작성하면서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는 등 3명의 순위를 부당 변경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수탁업체의 업무지원 대가 지급 지도·감독 부적정**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조치 기관 부산광역시

내 용

1. 업무개요

부산광역시는 2005. 4. 4.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관내 ◫구의 폐교용지(구 ♡♡중학교 부지 18,718㎡)에 영어교육 강화 목적으로 ○○[25](이하 "●●"이라 한다)를 조성 및 공동운영하기로 협약하여 2009년 5월 이를 건립[26]하였다.

이후 위 관서는 ●●에 대한 관리·운영 위탁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27](현 대표이사 AA, 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 ☆☆(현 대표이사 BB) 컨소시엄과 2008. 10. 30.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09. 5. 8.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위 업체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28](이하 "수탁업체"라 한다)에 ●●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

25) 5층 규모의 행정동(7,494㎡) 및 4층 규모의 체험동(8,219㎡)으로 구성됨
26) 시비 308억 원(공사비 275억 원, 기자재 구입비 33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됨
27) 2012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명칭이 변경됨
28) ♧♧와 주식회사 ☆☆이 각각 3억 5천만 원을 공동투자(출자)하여 설립함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관서는 ●●를 관리·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고, 이를 위해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 정관」 제25조 및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업체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를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업체는 ●●를 위 관서로부터 재정지원 없이 자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수탁업체가 ●●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전부[29]를 ●●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수탁업체가 위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익 발생 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영리법인인 수탁업체가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매년 수탁업체의 운영실태 점검 및 회계결산 검사 등을 하면서 수탁업체가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9) 1차(2008년 10월), 2차(2012년 6월) 위탁계약까지는 '일부' 재투자로 되어 있었으나 3차(2014년 6월) 위탁계약부터 '전부' 재투자로 변경됨

2012. 3. 31. 수탁업체는 ♧♧ 측 공동대표이사로 주식회사 ■■[30] 대표이사 CC를 선임하였으며, 2012. 4. 1. 수탁업체의 사업장에서 CC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880만 원을 주식회사 ■■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원계약서'[31]를 체결하였다.[32]

그러나 위 업무지원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최초 체결된 계약서에는 CC의 구체적인 지원업무의 내용 및 범위와 근무 형식[33]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고, 2018년에 갱신된 계약서에는 지원업무로 대표이사로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경영자문 등 용역 제공으로서 영어교육 관련 노하우 제공 등이 함께 명시되는 등 계약서상 업무가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인지 경영자문 등 용역 제공의 역할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한편 위 CC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2019년 3월 현재까지 상근하지 않은 채 매년 4회에서 6회 수탁업체에 방문한 것이 전부이고, 내부 문서의 공동결재란에 결재를 하지 않았으며, 수탁업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34] 업무지원 계약서상 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35]

그러나 수탁업체는 위 CC가 수탁업체의 업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880만 원씩, 계 7억 4,580만 원(2012년 4월~2019년 3월)을 주식회사 ■■ 등[36]에

30) 주식회사 ■■는 수탁업체의 모회사인 ♧♧의 자회사임
31) 수탁업체와 주식회사 ☆☆간 주식회사 ☆☆측 공동대표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2009. 5. 31. 기체결한 업무지원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함
32) CC는 2012. 3. 31. 공동대표이사로 선출된 당일 이사회에서 자신이 수탁업체에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결정하고서도 바로 다음날(2012. 4. 1.) 수탁업체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와 '업무지원계약서'를 체결함
33) 업무지원 계약서상 업무지원 장소를 수탁업체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다른 근무 형식은 명시하지 않음
34) 2016. 12. 9. 주식회사 ☆☆측 공동대표이사로 DD이 선출되는 이사회에 불참한 것을 포함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동안 전년도 결산보고를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음
35) 이와 대조적으로 주식회사 ☆☆측 공동대표이사는 업무지원계약서에 따라 수탁업체에서 상근 및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
36) 2012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주식회사 ■■에 지급하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에 지급함

지급하였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매년 수탁업체로부터 사업운영 및 회계결산 등 운영실적을 보고받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수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회계, 관리·운영, 홈페이지 관리·홍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포함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도 수탁업체와 주식회사 ■■ 등과 체결한 업무지원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부산광역시는 수탁업체가 공동대표이사 CC의 업무지원 대가로 주식회사 ■■ 등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시 「○○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가 업무지원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지 않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로 하여금 주식회사 ■■ 등과 체결한 업무지원 계약서상 지원인력의 업무 내용, 범위 및 지원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통합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품 구입 등에 대한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위 관서 소속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공통수요가 있는 물품 등을 개별기관 또는 학교별로 구매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통합계약을 하면 계약 건당 구매물량이 늘어나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기준금액[37]에 해당되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38]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그대로 구매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감사원에서도 2015년 10월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 시·

37)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비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3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도록 되어 있음

도교육청의 통합계약 추진 노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대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통합계약을 활성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교육부는 2016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을 시달하였다.

【 시·도교육청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 】

- 각급 학교 지원예산 중 물품구매 예산은 교육(지원)청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물품을 일괄 구매한 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교회계 예산 중 통합계약 대상 필수 물품(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TV, 비디오프로젝터, 모니터, 프린터) 또는 각급 학교에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교육(지원)청에서 수요 조사 후 일괄 구매하도록 권고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16년~2018년 물품 통합 구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에 따른 통합계약 대상 필수 물품 중 태블릿PC, 비디오프로젝터, 프린터 등 3개 품목은 규격 및 사양이 다양하다는 사유로 물품 공동구매 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동구매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규격 및 사양 표준화가 가능한 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 TV, 모니터 등 4개 품목은 구매 시 통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에 따른 통합계약 필수 품목 중 규격 및 사양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본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소속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의 수요를 조사한 후 일괄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개별기관이나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11.~3. 29.) 중 위 관서에서 최근 3년간(2016~2018년) 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 TV, 모니터 등 4개 품목의

구매 예산 집행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위 관서가 물품 통합계약 수요조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참여하지 않은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의 경우 개별계약 체결을 통한 구매 방식도 허용하는 등 통합계약 및 개별계약을 병행하고 있었다.

【 통합계약 및 개별계약을 병행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례 】

- 2016년 위 관서에서는 “물품 통합 구매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데스크톱컴퓨터(단가 659,842원), 노트북(단가 663,754원), TV(단가 706,295원), 모니터(단가 119,383원)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통합구매 실시
- 그런데 2016년 위 관서 소속 교육행정기관인 ◩◪은 위 관서의 통합계약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데스크톱컴퓨터 163대(140,119,500원, 단가 859,629원), 모니터 79대(18,960,000원, 단가 240,000원) 등을 개별구매

그 결과 위 관서에서 [표]와 같이 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 TV, 모니터 등 4개 품목을 통합계약 및 개별계약을 병행하여 구매하지 않고 모두 통합계약으로 체결하여 구매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최근 3년간(2016~2018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016~2018년 데스크톱컴퓨터 등 4개 품목 구매 현황[1)]

(단위: 원, 개, 백만 원)

구분	실제계약(통합계약 및 개별계약 병행)					모두 통합계약 시[2)]			예산절감 가능액 (H=E-G)
	통합계약		개별계약		구매액 (E=A×B+C×D)	단가(A)	수량 (F=B+D)	구매액 (G=A×F)	
	단가(A)	수량(B)	단가(C)	수량(D)					
데스크톱 컴퓨터	672,072	12,141	895,320	13,845	20,555	672,072	25,986	17,464	3,091
노트북	769,878	4,747	1,058,979	4,740	8,674	769,878	9,487	7,304	1,370
TV	861,507	2,698	1,041,180	2,490	4,917	861,507	5,188	4,470	447
모니터	123,012	8,115	231,718	10,577	3,449	123,012	18,692	2,299	1,150
합계	-	27,701	-	31,652	37,595	-	59,353	31,537	6,058

주: 1. ‘데스크톱컴퓨터의 CPU와 모니터’의 통합계약 및 개별계약의 사양 차이는 없으며, ‘TV’는 통합계약(65인치) 개별계약(55인치) 적용, ‘노트북’은 개별계약의 사양이 다양하여 파악이 어려움

2. 통합계약 사양으로 ‘데스크톱컴퓨터’(CPU i5 이상 및 6세대 이상 RAM 4G 이상, HDD 500G 이상, ODD 장착), ‘노트북’(CPU i5 이상 및 6세대 이상 RAM 4G 이상, HDD 500G 이상, ODD 장착), ‘TV’(65인치 이상, LED, FullHD 이상), ‘모니터’(Wide형, 24인치 이상, LED, FullHD 이상) 적용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통합계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통합계약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물품 통합계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통합계약 필수 품목 중 규격 및 사양 표준화가 가능한 데스크톱컴퓨터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소속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 단위에서 개별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 단위로 수요조사를 거쳐 일괄구매하는 등 통합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3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위 관서 소속 각급 학교의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및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각급 학교 계약담당자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2019. 3. 11.~3. 29.) 중 위 관서 소속 각급 학교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계약을 맺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학생식당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 18,757,200원, 2017. 2. 3.)와 “도제강의실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 21,879,700원, 2017. 12. 4.) 계약을 무자격업체인 ♬♬(대표자 EE)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계 16개 학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계 13개 학교 등 총 29개 학교에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34개 무자격업체와 35건의 공사계약(합계 660,269천 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를 내버려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전문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각급 학교 계약담당자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계약을 무자격업체와 체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교육청	학교명	계약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등록 업종	적정 업종
대전	▲▲고	옥상방수공사	’16. 5. 23.	15,730	◣◣	없음	습식·방수공사업
	▶▶고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16. 11. 7.	21,960	◤◤	없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교	건물 내외부 도색 공사	’16. 2. 24.	18,348	◥◥	없음	도장공사업
	◀◀고	야외공연장 지붕 공사	’17. 3. 3.	16,144	☏☏	없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고	기숙사 무용실 등 인테리어 공사	’17. 2. 21.	15,901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초	음악실 방음설비 공사	’18. 7. 23.	15,103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초	교실 및 화장실 조성공사	’18. 12. 27.	21,517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초	교실 차양 공사	'18. 2. 19.	18,997	♨♨	없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초	범죄예방시설물 설치공사	’18. 8. 3.	17,996	▤▤	없음	시설물유지관리업
	◬◬고	위클래스 리모델링 공사	’18. 7. 27.	21,50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고	체육관 외부 도장공사	’18. 5. 4.	17,633	▦▦	없음	도장공사업
	◐◐고	관리실 시설 공사	’18. 2. 12.	17,843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고	농구장 배수로 정비 공사	’18. 2. 22.	20,900	▨▨	없음	시설물유지관리업
소계	**13개 학교**	**13건**		**239,572**	**13개 업체**		
부산	◒◒고	중앙현관 난간대 공사	’17. 2. 16.	21,670	▩▩	없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고	신관4층입구 리모델링공사	’17. 12. 19.	19,487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고	3층 실습실 환기설비공사	’18. 2. 19.	19,650	◠◠	없음	시설물유지관리업
	●●고	Wee클래스 구축 공사	’16. 1. 26.	16,96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별관 지붕 공사	’17. 12. 7.	16,920	♀♀	없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남교사 휴게실 설치 공사	’18. 4. 25.	19,88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교육청	학교명	계약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등록업종	적정업종
부산	◧◧고	운동장 화단 조경공사	’18. 2. 14.	22,000	♩♩	없음	조경식재공사업
	◨◨고	중앙정원 보도블럭 교체공사	’17. 2. 10.	17,600	♪♪	없음	시설물유지관리업
	◩◩고	학생식당 리모델링공사	’17. 2. 3.	18,757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도제강의실 리모델링공사	’17. 12. 4.	21,898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고	보건실 인테리어 공사	’17. 2. 15.	15,30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고	학생휴게쉼터공사	’17. 1. 19.	21,505	⁂	없음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과학교실 리모델링공사	’18. 8. 1.	19,87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교	교실 인테리어 공사	’16. 2. 16.	18,70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교	실내놀이실 현대화 공사	’17. 7. 31.	15,055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체육활동실 캐노피 공사	’17. 7. 31.	21,670	○▽	없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초	교실 바닥재 교체 공사	’18. 4. 24.	15,00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중	농구장 바닥 도색 공사	’17. 10. 10.	17,307	○◇	없음	도장공사업
	◖◖중	교육환경개선공사	’18. 2. 26.	19,250	○♡	없음	시설물유지관리업
	◗◗초	유치원 출입구 인테리어 공사	’16. 2. 25.	21,20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초	과학실 개보수 공사	’17. 8. 16.	19,800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오케스트라실 방음 공사	’18. 12. 19.	21,218	○☆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소계	**16개 학교**	**22건**		**420,697**	**21개 업체**		
합계	**29개 학교**	**35건**		**660,269**	**34개 업체**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학교 운동시설의 중금속 등 유해성 검사 생략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조 치 기 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용

1. 업무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시설이 설치된 관내 1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위 운동시설에 인체에 유해한 4대 중금속[39]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해성 전수검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0. 11. 29. 학교 운동시설 중 인조잔디의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한국산업표준(표준번호: KS M 3888-1)에 따르면 [표]와 같이 4대 중금속 검사대상이 인조잔디 충전재(탄성칩)로 국한되다가 2013. 11. 14. 개정되면서 인조잔디 충전재(탄성칩) 및 파일(매트) 등으로 확대되는 등 유해성 검사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이 2011. 4. 19. 학교체육시설 중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의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표준번호: KS F 3888-2)에 따르면 탄성포장재의 고무분말(우레탄칩) 등 주재료뿐만 아니라 포설

39) 납(Pb), 수은(Hg), 크로뮴(Cr), 카드뮴(Cd)

형 탄성포장재 등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4대 중금속의 함유량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학교 운동시설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현황

한국산업표준(KS) 표준명 및 번호	제정			개정			중금속 기준치 (mg/kg)
	제정일자	4대 중금속 검사대상	검사방법	개정일자	4대 중금속 검사대상	검사방법	
실외 체육시설 -인조잔디: KS M 3888-1	2010. 11. 29.	충전재(탄성칩)	KS M 6956 함량시험[40]	2013. 11. 14.	충전재(탄성칩) 및 파일(매트) 등	KS M 6956 함량시험	Pb 90 이하 Cd 50 이하 Cr 25 이하 Hg 25 이하
실외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KS F 3888-2	2011. 4. 19.	고무분말(우레탄칩) 등 재료 및 제품	KS G ISO 8124-3 용출시험[41]	2014. 8. 18.	고무분말(우레탄칩) 등 재료 및 제품	KS M 6956 함량시험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자료 재구성

또한 교육부는 환경부의 초등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실태 조사결과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2016년 3월 및 7월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시설에 대한 유해성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42]하여 유해성 검사를 하되 2015년도에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016년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시달한 바 있다.[43]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학교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시설에 대한 2016년도 유해성 전수검사를 하면서 한국산업표준

40)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KS M 6956)으로 시료를 시험 용액으로 조제한 후 ①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및 원사 흡수 분광 광도법으로 납(Pb) 또는 카드뮴(Cd)의 함유량을 측정, ②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법으로 크로뮴(Cr)의 함유량을 측정, ③ 수은 환원 기화 비불꽃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및 수은 증기 발생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으로 수은(Hg) 함유량을 측정함

41) 완구의 안전성을 위한 특정 원소의 용출시험방법(KS G ISO 8124-3)으로 완구를 삼킨 후 재료가 위산과 접촉하는 시간 동안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구 재료로부터 용출되는 원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42) 「우레탄 트랙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2017년 3월)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는데 우레탄 수지를 굳힐 때 사용하는 경화제나 붉은색, 녹색 안료에 납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레탄 운동시설의 유해성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공 후 현장 시료채취를 통한 검사가 필요함

43) 2014. 8. 18. 한국산업표준(KS F 3888-2)이 개정되어 중금속 검사방법이 용출시험에서 함양시험으로 변경되는 등 유해성 검사기준이 점차 강화된 추이를 반영함

(KS M 3888-1 및 F 3888-2)에 따른 유해성 검사실적이 없거나 한국산업표준(KS M 3888-1)이 강화되기 전에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진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시설을 유해성 검사 생략 대상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의 우레탄 배드민턴장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F 3888-2)이 제정되기 전 배트민턴장 시공 재료인 고무분말(우레탄칩)[44]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사를 하는 등 한국산업표준(KS F 3888-2)에 따른 검사실적이 없고, ○▲초등학교 등 20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M 3888-1) 제·개정 전인 2009년 3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인조잔디 충전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강화된 유해성 검사기준(KS 3888-1, 2013. 11. 14.)에 적합한 검사결과가 아닌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6년도 유해성 검사를 생략하였다.[45]

이에 따라 [별표]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시설에 대한 2016년도 유해성 검사 생략 현황”과 같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018년 5월 자체 실시한 유해성 검사에서 위 21개 학교 중 ○●초등학교의 우레탄 배드민턴장과 ○▲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각각 11,080 및 5,035mg/kg)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경우 인조잔디 운동장이 2016. 12. 30.

---

44) 2009. 12. 22. 설치된 우레탄 배드민턴장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재료 중 고무분말(우레탄칩)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KS M 3888-1 및 F 3888-2)이 제정되기 전 자동차용 고무의 납 및 카드뮴 함유량을 검사하는 방법(KSR 1301)을 준용하여 같은 해 11. 26. 검사를 실시함

45) 교육부는 2014년 8월에 한국산업표준(KS F 3888-2)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도에 실시한 검사는 개정된 한국산업표준(KS F 3888-2)을 만족하여 2016년도 유해성 검사를 생략 가능하도록 검사방법을 시달하였으나,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유해성 검사 생략의 취지와 달리 2015년도 이전에 실시한 학교를 모두 생략함

부터 2018. 9. 29. 사이에 새로운 시설로 교체됨에 따라 교체되기 전 인조잔디 운동장에 중금속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실시한 유해성 전수검사 대상학교에서 빠진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의 학생은 2018년 5월까지 최소 1년 8개월 동안 체육활동 등의 과정에서 중금속이 과다 함유된 우레탄 구장 및 인조잔디 운동장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이 교체된 ○◨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경우에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었을 개연성을 가진 인조잔디 운동장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 1개월 동안 체육활동 등의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2018년도 유해성 검사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던 2개 학교의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으로 재조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 유해성 실태조사를 엄정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학교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면서 현행 유해성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거 유해성 검사결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시설에 대한 2016년도 유해성 검사 생략 현황

(단위: mg/kg)

연번	학교명	시설명	설치일자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전 검사			'18년 5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검사	
				검사일자	검사대상	검사결과	검사대상	검사결과
1	○●초	우레탄 배드민턴장	'09. 12. 22.	'09. 11. 26.	고무분말 (우레탄칩)[1]	적합	시공된 우레탄[2]	납 11,080 검출
		인조잔디운동장	'09. 12. 22.	'09. 12. 15.	충전재[1]	〃	충전재 및 파일	적합
2	○■초	〃	'11. 9. 20.	'11. 9. 20.	충전재	〃	〃	〃
3	○▲초	〃	'08. 4. 29.	'13. 4. 22.	〃	〃	〃	충전재는 적합 파일에서 납 5,035 검출
4	○▶중	〃	'08. 11. 5.	'13. 4. 16.	〃	〃	〃	적합
5	○▼중	〃	'11. 3. 29.	'11. 12. 24.	〃	〃	〃	〃
6	○◀중	〃	'11. 7. 28.	'11. 4. 11.	〃	〃	〃	〃
7	○◆고	〃	'11. 11. 7.	'11. 10. 11.	〃	〃	〃	〃
8	○★중	〃	'12. 1. 18.	'11. 12. 16.	〃	〃	〃	〃
9	○⊙고	〃	'12. 12. 5.	'13. 4. 23.	〃	〃	〃	〃
10	○▣고	〃	'13. 2. 23.	'13. 2. 22.	〃	〃	〃	〃
11	○◈중	〃	'13. 5. 16.	'13. 6. 3.	〃	〃	〃	〃
12	○◬중	〃	'13. 5. 30.	'13. 4. 18.	〃	〃	〃	〃
13	○◎초	〃	'12. 4. 27.	'12. 4. 27.	〃	〃	〃	〃
14	○◐초	〃	'12. 2. 6.	'12. 2. 6.	〃	〃	〃	〃
15	○◑중	〃	'12. 1. 9.	'12. 1. 9.	〃	〃	〃	〃
16	○◒중	〃	'11. 11. 1.	'11. 11. 1.	〃	〃	〃	〃
17	○◓중	〃	'11. 12. 28.	'11. 12. 28.	〃	〃	〃	〃
18	○◘고	〃	'11. 10. 12.	'11. 10. 12.	〃	〃	〃	〃
19	○◙중	〃	'07. 3. 29.	'13. 4. 19.	〃	〃	미실시	'16. 12. 30. 시설 교체
20	○◧초	〃	'11. 11. 4.	'11. 10. 28.	〃	〃	〃	'17. 4. 28. 시설 교체
21	○◨초	〃	'08. 12. 12.	'09. 3. 30.	충전재[1]	〃	〃	'18. 9. 29. 시설 교체

주: 1. 한국산업표준(KS M 3888-1 및 F 3888-2)이 제정되기 전 자동차용 고무의 납 및 카드뮴 함유량을 검사하는 방법(KSR 1301)[46]을 준용하여 검사 실시

2. 우레탄 배트민턴장을 시공하기 위해 고무분말(우레탄칩), 우레탄바인더, 프라이머(접착제), 실링제(접착제) 등이 시공 과정에 사용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자료 재구성

46) 자동차 부품 중 고무에 있는 유해물질 측정하는 방법(KS R 1301)으로 시료를 시험 용액으로 조제한 후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및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으로 납(Pb) 또는 카드뮴(Cd)의 함유량을 측정